

<별지>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영 제80조제1항제2호바목”을 “제80조제1항제2호바목 및 제241조제1항제8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) 영 <u>제80조제1항제2호바목</u> 에서 “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 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”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.	제10조의2(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) -- <u>제80조제1항제2호바</u> <u>목 및 제241조제1항제8호</u> ----- ----- -----.